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

□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박수빈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‘공유재산심의회’의 기능을 보완하고,
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
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.

□ 현행 공유재산심의회는 치밀성 없이 타성적으로 운영되어,
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계획이 의회에 반복적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.
의회는 이러한 미비점을 인식하면서도, 행정 공백과 사업 지연을
우려해 어쩔 수 없이 의결해야 하는 상황을 계속 직면해 왔습니다.
이는 의회의 심의·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.

- 또한, 의회 의결 없는 예산 편성, 계획의 변경·취소 시 사전 제출 누락 등 법정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해, 의회의 전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이에, 본 개정안은 시의원의 심의회 참여를 제도화하고, 의결된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·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,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의회의 사전·사후 감독기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첫째,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책임감 있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
- 둘째,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공개할 때,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.
- 셋째,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부디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!